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487

발의연월일: 2024. 11. 12.

발 의 자:조경태·이헌승·서천호

곽규택 • 박상웅 • 김태호

정성국 • 유용원 • 이양수

엄태영 의원(10인)

제안이유

급변하는 해양환경 변화와 우리해역 내 주변국 관공선 및 불법조업 외국어선의 빈번한 출현, 해양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발생과 같 이 해양에서의 안보, 안전, 자원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위 협이 발생함에 따라 해양경비 수요와 그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비용 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특히, 대한민국은 독도 등 주변국가와 해양영토 갈등, 불법조업 외국어선으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 대형 재난사고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 등 종합적인 해양 치안수요는 매우 높은 편이며, 해양에서의 주권수호와 사고 예방을 위한 국민들의 눈높이도 매우 높아졌음.

현재 저강도·비군사적 해양위협은 물론 해양사고 발생 시 해양법 집행기관인 해양경찰청을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광활한 관할 해 역을 고려할 때 부족한 해양경찰 경비세력을 활용한 전략적인 해양경 비 활동이 요구됨.

이에 각종 해양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해양경비 활동을 위해 안보·안전 등과 관련된 각종 해양경비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해경의 해양경비정보 수집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한편, 국제적으로 수송이 금지된 물품 또는 위험물 등을 운송하는 선박이 우리 영해를 항해하는 경우, 해양안보와 공공질서에 위협을 초 래하는 만큼 금지물품 수송이 의심되는 선박 등을 해상검문검색 및 나포 대상으로 확대하여 UN회원국으로서 국제평화와 안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전략적인 해양경비 활동을 위해 수집·분석이 필요한 '해양경비정 보'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마련함(안 제2조제12호).
- 나. 현행 「해양경비법」은 정보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만 명시(제19조)하고 있고, 요청받은 기관의 정보 제공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협조를 받는 데 한계가 발생함에 따라 본조 후단에 해양경비 활동에 필요한 해양경비정보에 대해 해양경찰청장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상대기관의 제출 의무를 부여함(안제7조의2 신설).
- 다.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국가로서 공공질서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

적 노력에 기여하기 위하여 금지물품의 이송이 의심되는 선박 등을 해상검문검색 및 나포 대상에 추가함(안 제12조제1항제2호, 제13조 제3호).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경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2. "해양경비정보"란 해양경비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 가. 경비수역 및 경비세력 등에 관한 정보
 - 나. 선박등의 위치, 출·입항, 승선원 및 화물 등 선박등의 운항에 관한 정보
 - 다. 해양시설, 임해 중요시설 및 선박등의 보안·안전에 관한 정보
 - 라. 해양에서 수집한 영상·음성·음향·전기통신데이터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처리·가공·활용된 정보
 - 마. 수심·조류·해양기상 등 해양 특성과 해저자원, 해양수산자 원 등에 관한 정보
 -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정보를 결합·융합·분석·가공하여 생 성된 정보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7조의2(해양경비정보의 수집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비 활동에 필요한 해양경비정보를 수집·관리 및 활용할 수 있다.
 -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양경비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는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비정보의 수집·관리 및 분석을 위하여 해양경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른 해양경비정보시스템 구축·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 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경비정보의 수 집·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제1항제2호 중 "대량파괴무기나"를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하기 위하여 대량파괴무기,"로, "무기류 또는 관련 물자"를 "무기류나 관련 물자 또는 금지 물품"으로 한다. 제13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하기 위하여 금지물품의 수송에 사용되고 있다고 의심되는 선박 등제19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

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 제2조(정의) |
|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 1. ~ 11. (생 략) | 1. ~ 11. (현행과 같음) |
| <u> <신 설></u> | 12. "해양경비정보"란 해양경비 |
| | 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
| |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정보를 말한다. |
| | 가. 경비수역 및 경비세력 등 |
| | <u>에 관한 정보</u> |
| | 나. 선박등의 위치, 출·입항, |
| | <u> </u> |
| | 의 운항에 관한 정보 |
| | 다. 해양시설, 임해 중요시설 |
| | 및 선박등의 보안・안전에 |
| | <u> 관한 정보</u> |
| | 라. 해양에서 수집한 영상ㆍ |
| | 음성·음향·전기통신데이 |
| | 터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
| | <u> 처리・가공・활용된 정보</u> |
| | 마. 수심·조류·해양기상 등 |
| | 해양 특성과 해저자원, 해 |
| | 양수산자원 등에 관한 정 |
| | <u>보</u> |

<신 <u>설></u>

<u>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u> 하는 정보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정

 보를 결합・융합・분석・

 가공하여 생성된 정보

제7조의2(해양경비정보의 수집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 비 활동에 필요한 해양경비정 보를 수집・관리 및 활용할 수 있다.

-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양경비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는 목적 외의 다른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비정 보의 수집·관리 및 분석을 위 하여 해양경비정보시스템을 구 축·운영할 수 있다.
-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른 해양경비정보시스템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기 술이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12조(해상검문검색) ① 해양경 전환관은 해양경비 활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등에 대하여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상검문 검색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외국선박에 대한 해상검문검색은 대한민국이 체결·비준한 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라 실시한다.

- 1. (생략)
- 2. <u>대량파괴무기나</u> 그 밖의 <u>무</u> <u>기류 또는 관련 물자</u>의 수송 에 사용되고 있다고 의심되는 선박등

제13조(추적・나포) 해양경찰관은 제13조(추적・나포) -----

| | 업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
|----|--------------------------|
| |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
| |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경비정 |
| | 보의 수집・관리 등에 필요한 |
| |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
| | <u>정한다.</u> |
| 4] | 12조(해상검문검색)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현행과 같음) |
| | 2. <u>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u> |
| |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하기 |
| | 위하여 대량파괴무기, |
| | 무기류나 관련 물자 또는 금 |
| | 지 물품 |
| | |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선박등에 대하여 추적 ·나포(拿捕)할 수 있다. 다만, 외국선박에 대한 추적권의 행 사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 합 협약」 제111조에 따른다. 1.·2. (생 략)

제19조(협조요청) 해양경찰청장은 지지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경비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보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1. • 2. (현행과 같음) |
|-------------------|
| 3.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
|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하기 |
| 위하여 금지물품의 수송에 사 |
| 용되고 있다고 의심되는 선박 |
| <u> </u> |
| 제19조(협조요청) |
| |
| |
| |
| |
| |
|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 |
| 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 |
| 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 |